

● 제299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
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21. 3. 3.

보건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2224

I. 동의안 개요

1. 제출경위

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2월 5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가.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민이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의 경우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 응급실을 가는 것 외에 다른 조치방법이 없어 의료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상황임

나. 이에 독성물질 중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, 시민이 중독사고 시 적절한 응급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」를 설치하고 위탁·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위탁기간 : '21. 5. ~ '23. 12.(2년 8개월)
- 인 력 : 센터장 1명(비상근),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1명(상근), 행정전산원 1명(상근), 상담원 1명(상근)
- 소요예산 : 480,000천원 ('21년, 시비100%)
- 위탁내용
 - 독성물질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
 - 화학제품 사용정보 및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(전화 및 인터넷 상담)
 - 일상생활 중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의 정보제공
 - 독성물질 노출, 중독 사고 등 모니터링을 통한 중독 예방·관리

나. 필요성

- 독성물질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담원의 전문성(간호사 등)이 요구되므로 응급의료 정보제공과 치료 연계가 가능한 전문기관(단체 또는 법인)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

제5조(센터의 운영) ② 시장은 센터의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연계를 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 제출 개요

- 시민건강국이 제출한 의안번호 2224호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이하 '민간위탁 조례')¹⁾에 따라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- 시장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주요사무는 독성물질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, 화학제품 사용 정보 및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, 일상생활 중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의 정보제공 등임.

2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검토

-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「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」 (2020.3.26. 제정) 제4조제1항²⁾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.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

- 「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」 제4 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
2. 시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응급의료정보의제공
3.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과노출 및 중독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서비스 제공
4. 독성물질 및 노출 정보, 중독 사고,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
5. 독성물질의 올바른 사용정보 제공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
6. 독성물질 분석 및 중독 사고에 대한 조사
7. 독성물질의 위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와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
8.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」 제5조³⁾에서 센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도록

료)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성물질에 중독되는 경우 효과적인 치료와 상담을 위한 중독관리 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 할 수 있다.

- 3) 「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」 제5조 (센터의 운영)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.

② 시장은 센터의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연계를 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단,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

하고 있으며,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연계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<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업개요 >

- 위탁기간 : '21. 5. ~ '23. 12.(2년 8개월)
- 인 력 : 센터장 1명(비상근),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1명(상근), 행정전산원 1명(상근), 상담원 1명(상근)
- 소요예산 : 480,000천원 ('21년, 시비100%)
- 위탁내용
 - 독성물질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
 - 화학제품 사용정보 및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(전화 및 인터넷 상담)
 - 일상생활 중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의 정보제공
 - 독성물질 노출, 중독 사고 등 모니터링을 통한 중독 예방·관리

- 민간위탁 운영평가를 위해 제출된 산출 내역을 보면 신규위탁으로 인한 시스템 설비 구축 및 홈페이지 디자인 등의 초기비용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1차년도의 예산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음.

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
1. 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
2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
3. 그 밖에 시장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

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〈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연간 위탁비용 〉

(단위:천원)

연도별	사업비용	예산과목	세부 내역		
		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
2021년	480,021	민간위탁금	125,440	93,478	261,103
2022년 ~2023년	484,778	민간위탁금	270,960	109,000	104,818

3 사무의 민간위탁 적절성

- 「민간위탁조례」제4조제1항4)에서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.
- 본 동의안에서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독성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, 화학제품 및 응급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인정되는 단체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.
- 이외에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의결과에서 ① 독성 및 중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외에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검토 ② 팀장(상근)에 비해 센터장(비상근) 인건비 과다 책정 및 인건비와 첫 해 센터 운영 방향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인건비의 명확화 필요 ③ 센터장의 출근일수·투입시간 등 기준 수립 필요 등에 대한 사항이 지적된 만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)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〈 2021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〉

연번	부서명	위탁사무명	유형		수탁기관	위탁기간	심의결과
1	감염병관리과	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	사무	신규 (공모)	-	2년 8개월	적 정

3 종합의견

- 생활화학제품 등의 올바른 사용정보 및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등 시민의 알권리 증진 등을 위해 2020. 03월 「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어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음.
- 센터의 설립 목표는 독성물질 데이터베이스(DB)를 구축하고 화학제품 사용정보 및 응급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, 일상생활 중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·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바, 의료지식 및 상담서비스 등의 의료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.

문 의 처

김현정 입법조사관 (02-2180-8155)